

청주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646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

담당변호사 신인순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4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8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20,487,050원 및 그 중 20,478,524원에 대하여 2023. 10. 20.부터 2024. 7. 13.까지는 연 8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2023. 5. 4.자 매매계약은 22,242,031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3. 피고 B은 원고에게 22,242,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 근거

가. 피고 A에 대하여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나. 피고 B에 대하여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다. 원고는 주문 제3항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구하고 있으나, 가집행의 선고는 청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한다.

판사 노승욱

별지

1) 22,242,031원 = 20,487,050원 + 1,754,981원[=20,478,524원 × 8% × (1 + 26/365, 2023. 10. 20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2024. 11. 14.까지)]